

인천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0가단255411(본소), 2021가단239744(반소) 판결
[물품대금 · 계약금반환 청구]

전 문

원고(반소피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예우 담당변호사 김용국

피고(반소원고)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경연 담당변호사 이창규

변론 종결2022. 12. 1.

판결 선고2023. 1.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6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9. 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1. 본소

주문 제1항과 같다.

2. 반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게 16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자동화기기, PLC설비 제조 및 전기, 전자 제어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는 자동화장비 프로그램, 설계 및 전장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에 화장품 생산 파일럿 라인1)을 설치하는 작업을 도급하였다. E는 피고에게 위 작업 중 일부 공정에 관한 용역을 하도급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9. 9. 27. 피고가 원고에게 E로부터 하도급받은 용역 중 'TP충전 파일럿 라인 제어'2) 부분을 49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하는 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급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다만 6. 가.항의 "대금"은 "계약금"의 오기로 보인다).

DOCUMENT: 이 사건 공급계약서 일부(이미지 생략)

라. 피고는 2019. 10.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161,700,000원(= 계약대금 490,000,000원 × 계약금 비율 30% × 부가가치세 반영 110%)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생략),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설계작업 및 기계설비의 형태, 설비조작에 대한 제어프로그램 개발작업을 수행하고 작화작업 준비를 완료하였다. 이후 원고가 2019. 12. 31. 이전까지 E의 지시에 따라 D 계열사의 평택 공장에 위와 같이 개발한 제어프로그램의 입고 및 설치를 완료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1차 중도금 161,700,000원(= 계약대금 490,000,000원 × 1차 중도금 비율 30% × 부가가치세 반영 110%)의 이행기로 정한 '입고/설치'가 도래하였다.

이후 피고는 2020. 2.경 다른 회사에 용역을 맡기겠다고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2. 말경까지 평택 공장에서 대응을 마치고 작업을 종료하였으며, 2020. 2. 29.자로 피고에게 1차 중도금 161,7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행기가 도래한 1차 중도금 161,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1차 중도금의 이행기인 '입고/설치'는 D의 'TP충전 파일럿 라인'이 설치될 청주 공장의 8개 라인에 제어프로그램의 입고, 설치가 완료된 때를 의미하는 것이고, 위 청주 공장에 입고, 설치되기 전 시험 삼아 평택 공장에 입고, 설치한 것만으로는 위 공급계약에서 정하는 1차 중도금의 지급기한이 도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차 중도금 161,7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아가 원고는 일방적으로 용역대금 증액을 요구하면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을 임의로 중단하였고 이에 피고는 2020. 3. 9.경 위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61,7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본소에 관하여

1) 앞서 본 기초사실에다가 갑 제2 내지 4, 6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G, H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가 TP충전 파일럿 라인 제어프로그램을 개발한 다음 평택 공장에 이를 입고, 설치함으로써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1차 중도금의 이행기인 '입고/설치'가 도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 사건 공급계약은 1차 중도금(계약대금의 30%)의 이행기를 '입고/설치'로, 2차

중도금(계약대금의 30%)의 이행기를 '셋업/완료'로 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공급계약에 있어서 각 중도금 이행기로서의 '입고/설치'와 '셋업/완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해석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이 되는바, 특히 '입고/설치'와 '셋업/완료'의 각 단계에서 동일하게 계약대금의 30%가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공급계약의 전체적인 수행 과정에서 위 각 단계가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 이 사건 공급계약은 제품납품일, 즉 계약제품(제어프로그램)의 입고기한은 계약일(2019. 9. 27.)로부터 2.5개월 후인 2019. 12. 12.경으로, 설치완료일, 즉 설치완료기한은 2019. 12. 31.로 정하고 있다. 반면에 원고가 2020. 1. 28. 피고로부터 송부받은 E의 스케줄표(갑 제7, 8호증. 이는 제어프로그램이 최종 입고, 설치될 D의 청주 공장에 관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에는 그 최초 단계인 '개선 설계'(1호 정품로선, 6호 증정로선, 7호 증정크림 라인) 또는 '상세 설계'(3호 정품로선, 4호 정품크림, 5호 증정로선)가 2019. 12. 19. 또는 2019. 12. 30.에야 시작되고 현장 작업은 2020. 2.경 시작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도 ①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전 원고가 피고에게 발송한 1, 2차 견적서(갑 제2, 3호증)에는 일관되게 '청주 현장' 외에 '구미 현장'도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평택, 구미, 청주 공장에서 모두 제어프로그램 작업을 한 G은 이 법원에서 '한 공장에서 설치, 운용된 제어프로그램을 다른 공장으로 이전하면서 운용 방식에 따라 일부 수정, 변경할 필요는 있었으나 근본적, 전체적인 프로세스(과정) 변경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증언한 점(증인 G 증언 녹취서 2~4쪽 등), ③ 원고가 2020. 3. 2.

피고에게 1차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갑 제6호증)을 발송하기 전까지 피고 또는 E가 원고에게 제어프로그램의 설계, 입고, 설치 등을 독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④ 피고 또는 E의 지시 없이 원고가 임의로 청주 공장 또는 구미 공장이 아니라 평택 공장에 최초로 제어프로그램을 입고, 설치할 이유를 발견할 수 없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급계약은 최종적으로는 D의 청주 공장에 입고, 설치될 제어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는 하나 그 세부 과정에 있어서는 원고가 평택 공장의 시험용 라인(원고는 '정품 골든라인'이라고 칭하고 있다)에 2019. 12. 12.경까지 제어프로그램을 입고하고 2019. 12. 31.까지 설치를 완료하여 시험가동을 한 다음 화장품 생산설비가 제작되는 구미 공장에서의 테스트 작업, 실제 파일럿 라인

8개가 구축되는 청주 공장에서의 셋업작업을 순차 진행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고, 위 공급계약에서 정한 입고기한 2019. 12. 12.경 및 설치완료기한 2019. 12. 31.은 평택 공장에 최초로 입고, 설치되는 기한을 의미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수긍할 수 있다.

○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 체결 무렵 계약금을 지급받은 이후 제어프로그램을 설계, 제작하고 평택, 구미 공장에 순차 이를 입고, 설치한 다음 시험하는 작업(이는 곧 평택, 구미 공장에 제어프로그램을 입고, 설치하고 시험하는 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를 수정, 변경하는 작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을 수행하면서도 추가로 계약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반면에 D 청주 공장에 제어프로그램을 설치, 입고하면 1차 중도금으로 계약대금의 30%를 지급받고 이후 같은 청주 공장에서 셋업작업을 완료하기만 하면 다시 같은 금액의 2차 중도금을 지급받는다는 것인데, 이는 각 단계별로 원고가 수행하여야 하는 작업의 양과 비교하여 볼 때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인다.

○ 원고가 최초로 평택 공장에 입고, 설치한 제어프로그램이 D 또는 E가 요구하는 기준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제어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고 이후 구미, 청주 공장에 순차 입고, 설치하는 과정에서 계속하여 제어프로그램을 수정, 변경하는 것은 2차 중도금을 지급받기 위한 작업 단계로 볼 수 있고, 원고가 평택 공장에 입고, 설치한 제어프로그램이 완벽하게 작동한다거나 구미, 청주 공장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완성되어 있어야만 1차 중도금의 이행기가 도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서 정한 1차 중도금 161,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그 이행청구를 한 다음날인 2020. 3.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9. 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반소에 관하여

앞서 본소에 관하여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9. 12. 31. 1차 중도금 161,700,000원의 이행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는 이후 위 공급계약에 따른

의무이행을 거절할 항변권이 있었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 특히 E의 스케줄표 내용에 비추어 보면 피고 또는 E는 원고에게 당초 이 사건 공급계약이 예정하고 있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수정, 변경작업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바, 그에 따라 원고가 계약대금의 증액을 요구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를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공급계약의 이행을 거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공급계약이 2020. 2.경 합의해지되었는지 여부와 별개로, 원고의 채무불이행, 즉 이행거절을 이유로 피고가 위 공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설령 피고의 해제가 인정되더라도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원상회복의무 내지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그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양승우

- 1) Pilot Line, 본격적인 제품 양산용 라인(생산설비)를 구축하기에 앞서 시험 생산을 위하여 마련하는 라인을 의미한다.
- 2) 화장품 주액설비(빈 화장품 용기에 내용물을 주입하고 뚜껑을 닫는 설비)의 제어프로그램(화장품 자동 생산에 필요한 로봇, 모터, 기타 외부기기와의 인터페이스 등을 생산공정에 맞게 동작시키는 프로그램) 개발 및 작화작업(설비 조작, 데이터 설정 및 모니터링 기능을 화면 터치 등을 통하여 실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작업)과 현장 셋업작업을 의미한다.